

의안번호	제 41 호
의결연월일	2004. 10.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사 천 시 장
제출년월일	2004. 10. 4

법무통계담당주사 심사필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1 호
----------	--------

제 출 일 자	2004. 10. 4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개정과 관련하여 사천시여비조례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 사천시여비조례 ⇒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나. 업무이관 및 부처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 행정자치부장관 ⇒ 중앙인사위원회

○ 예산청장 ⇒ 기획예산처장관

다.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법령명칭 정비

○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 삭제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여비조례” 를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로 한다.

제4조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 ” 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조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조제6호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
청장” 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명 : <u>사천시여비조례</u></p> <p>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생략)</p> <p>1. (생략)</p> <p>2. 제17조제1항 단서중 “<u>행정자치부장관</u>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본다.</p> <p>3. <u>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u>는 “<u>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u>”로 “<u>동규정 별표 1</u>”은 “<u>동규칙 별표 1</u>”로 본다.</p> <p>4. ~ 5 (생략)</p> <p>6. 제29조제1항중 “<u>행정자치부장관</u> 및 <u>예산청장</u>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u>행정자치부장관</u> 및 <u>예산청장</u>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7. (생략)</p>	<p>제명 : <u>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u></p> <p>제4조(-----)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u>중앙인사위원회</u>”----- ----- ---</p> <p><삭 제></p> <p>4. ~ 5 (현행과 같음)</p> <p>6. ---“<u>중앙인사위원회</u> 및 <u>기획예산처 장관</u>-----” 및 동조 제2항중 “<u>중앙인사위원회</u> 및 <u>기획예산처 장관</u>-----” ----- -----</p> <p>7.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②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진료를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지방공무원법

제63조 ②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진료를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등의 감액)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액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22조 (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

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다.

제24조 (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부임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출장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외국근무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가 그 발령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귀국하는 때에는 그 해당 직급·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6.30>

④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국내여행 중 사망한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중 1인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3.20>

③제2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안에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3호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 ④ 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1월 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 ⑤ 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7조 (전역된 자 등의 여비)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 또는 병역이 면제되어 귀가하는 자에 대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에 대한 여비액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4.18>

- ② 전투경찰순경 및 경비교도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자와 휴가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여비액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여비의 조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 ③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9조(여비지급의 특례) ①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자에 대한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지급

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별표 1] <개정 2000.4.18, 2001.3.20, 2001.6.30, 2002.1.4, 2003.6.13>

여비지급구분표(제3조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가목	대통령
나목	국무총리
특 호	<p>다목</p> <p>감사원장·국무위원·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을 제외한다)·대장 기타 국무위원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p>
라목	<p>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고등검사장, 검사장, 치안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의 부총장, 중장 기타 차관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p>
제1호	<p>1.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가목의 연구관 기타 차관보 또는 1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p> <p>2. 1호봉인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p> <p>3. 치안정감·소방총감</p> <p>4.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특3호봉의 대학교원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교육부실장,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 장학관</p> <p>5. 소장·준장</p>
제2호	<p>1.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용규정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지도관 기타 2급 또는 3급 상당봉급을 받는 공무원</p> <p>2. 2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p> <p>3. 치안감·경무관·소방정감·소방감</p> <p>4. 대학의 교수·부교수, 전문대학의 학장 및 교수, 교육부분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부장인 장학관, 국제교육진흥원장인 장학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인 편사연구관, 국립특수교육원장인 장학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p> <p>5. 대령·중령</p>

제3호	1.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직계약 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 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 및 라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 및 다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기타 4급 또는 5급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 3. 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전문대학의 부교수·조교수 및 21호 봉이상의 전임강사,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4. 소령·대위·중위·소위
제4호	위 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폐지 2003. 7. 14 행정자치부령 제204호>